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9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김승수·지성호·김용판

김정재 · 김기현 · 김예지

장제원 • 태영호 • 김 웅

이종성・추경호・최형두

서일준 · 이채익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보존지역 현상 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 민원처리를 할 때 주로 문화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서비 스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복원을 할 때에도 사전·예방적 수리·복원이 문화재 원형보존에 효율적이나. 증상이나 현상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주로 훼손이나 변형이 나타난 사후에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행사의 시간·장소·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며, 문화 산업 콘텐츠로 가공·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원천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 과정 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플랫폼에 축적된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될 것임.

또한,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게임·교육·공연·전시 등 민간의 콘 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 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 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문화재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수준에만 한정되어,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발맞추고, 기존 종이·보고서 등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

동 개정안을 통하여 문화재청이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
· 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지능
정보사회에 맞게 효율화·고도화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온전히 물
려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객관적·과학적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22조의9).
- 나. 문화재지능정보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연계·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0).
-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1).
-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 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함(안 제22조의12).

마.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안 제22조의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문화재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문 기구로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 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 및 활용
 -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필 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 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 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 분석 · 가공
 -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관리·활용 등
-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게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1제1항,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⑨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
	<u>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u>
	<u>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u>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
	<u>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u>
	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u>말한다.</u>
<u><신 설></u>	①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
	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
	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
	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
	보를 말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	
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	
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u><신</u> 설>

7. ~ 9.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장의2</u> 문화재 지능정보화 기 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 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 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문화재지능정보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 보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사 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

 · 저장・가공・분석・제공

 및 활용
-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등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 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신_ 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 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 다.

- ④ 제3항에 따른 대상·내용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등)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및 보급
 -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u>화</u>
 -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가공
 -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구축・운영
 -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관리·활용 등에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

<신 설>

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 스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문 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 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

 터의 체계적인 관리
 -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관리•활용 등
 -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관련 정책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

화 지원 등

-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 비스플랫폼 구축·운영에 필 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게 해당 대학등에 생성하거나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1 제1항,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 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